

국토교통부 예규 제388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Guidance for Surveillance on Authorized
Personnel Licensing Agency]**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사항 (AMENDMENTS)				
순번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Authority)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1. 6. 22	-	-	제정
2	2001. 8. 4	-	-	1차 개정
3	2001. 9. 8	-	-	2차 개정
4	2003. 9. 8	항공안전본부 예규 제08호	황재갑	3차 개정
5	2008. 5. 15	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7호	황재갑	4차 개정
6	2009. 6. 03	국토해양부 예규 제33호	이근영	국토부 조직개편 따라 항공안전본부 행정규정 폐지 후 제정
7	2012.05.31	국토해양부 예규 제231호	황재갑	규제 존속에 따라 기간연장
8	2014.04.16	국토교통부 예규 제18호	황재갑	정부조직법 반영
9	2015.5.12	국토교통부 예규 제100호	박영운	규제 존속에 따라 기간연장
10	2017.6.14	국토교통부 예규 제179호	정재향	항공안전법령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11	2018.5.18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	김은진	규제 존속에 따라 기간연장
12	2019.5.10	국토교통부 예규 제270호	김은진	항공영어시험업무 추가, 기관명칭 현행화 등
13	2020.6.11.	국토교통부 예규 제297호	김은진	점검표 개선 등
14	2021.5.31.	국토교통부 예규 제316호		규제 존속에 따라 기간연장
15	2024.5.22	국토교통부 예규 제388호		규제 존속에 따라 기간연장

목 차

제1조 목적(Objective)	1
제2조 적용범위(Application Scope)	1
제3조 지도·감독(Surveillance)	1
제4조 점검 계획수립(Establishment of Plan for Inspection)	2
제5조 점검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	2
제6조 점검반의 편성(Organization of Inspection Team)	2
제7조 점검관의 요건(Qualification Requirement of Inspectors)	2
제8조 점검관의 의무(Duties of Inspectors)	3
제9조 점검실시(Conduct of Inspection)	3
제10조 현지시정(Spot Correction)	3
제11조 점검결과 보고(Report)	3
제12조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Confirmation)	4
제13조 공단 이사장의 지원(Support of KOTSA's Chairman)	4
제14조 유효기한	4
[별표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점검표	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개정 2024.5.22 (국토교통부 예규 제38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다.

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학과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4. 실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5. 자격증명의 발급 및 교부업무에 관한 사항
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실시, 자격증명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부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 및 심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2. 월별 자격증명별 응시경력 심사 결과
3. 단순·반복 민원 이외의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4. 관련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5. 수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

④ 공단이사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과 관련하여 ICAO USOAP 결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공단이사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점검 계획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점검 수행 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점검의 구분) 제3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 : 시험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
2. 수시점검 :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제6조(점검반의 편성) ①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직원을 차출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관의 요건) ①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항공관계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운항자격심사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점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점검관의 의무) ① 점검관은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점검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점검실시) ① 점검관은 점검시작 전에 공단 관계직원에게 점검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관은 별표1의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시정) ① 점검반장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공단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관은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단이사장의 지원) ① 점검반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6.3)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항공 안전본부 예규 제67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29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3.4.1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31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8호)」는 폐지한다.

부 칙(2017.6.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5.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별표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점검표

□ 점검개요

점검대상		점검목적	
점검장소		점검기간	

□ 점검내용

위탁업무 분야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세부 점검결과
일반사항	• 제도개선 실적 및 건의사항 여부			
	• 민원처리의 적정성			
	• 시험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여부			
	• 부정행위자 조치 적정성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이행여부			
	• 시험문제 등 보안관리 실태			
	• 시험관리위원회 운영실태			
	• 시험시스템 오류 개선 등 운영유지보수 적정성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업무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1호·제6호)	•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 응시경력 부여의 적정성			
	• 시험 면제 처리실태 및 면제부여 적법성			
	• 시험문제 출제범위, 난이도 검토, 교체주기 등 문제관리의 적정성			
	• 시험위원 위촉·해촉 적법성 및 위원 자격요건 유지·관리 실태			
	• 시험위원 배정 적정성			
	• 시험 채점표 작성·관리 실태			
	• 이의신청 처리 현황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한정심사업무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5항제1호·제2호·제7호)	•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 응시경력 부여의 적정성			
	• 시험 면제 처리실태 및 면제부여 적법성			
	• 시험문제 출제범위, 난이도 검토, 교체주기 등 문제관리의 적정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위원 위촉·해촉 적법성 및 위원 자격요건 유지·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위원 배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채점표 작성·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처리 현황 			
<p>자격증명서 발급업무</p> <p>(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명 발급대장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명서 교부과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명서 기재사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자격증명의 전환 인정 발급 적정성 			
<p>항공영어시험 실시 및 증명서 발급 업무</p> <p>(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3호, 제135조제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력·면접인력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교육이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에 대한 시험 안내 등 민원대응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문제 배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 및 등급결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록 보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결과 통보 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처리 실태 			
<p>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교육 업무</p> <p>(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운영계획 수립·이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운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피드백 수렴·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콘텐츠의 최신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이수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수료 수수 적법성 여부 			
<p>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업무</p> <p>(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제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세칙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문제 출제범위, 난이도 검토 등 시험문제 운영·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위원 위촉, 배정 등 위원 관리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평가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결과 통보 처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처리 현황 			

점 검 일 자 : . . . 점 검 자 : (서명 또는 인)

점 검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